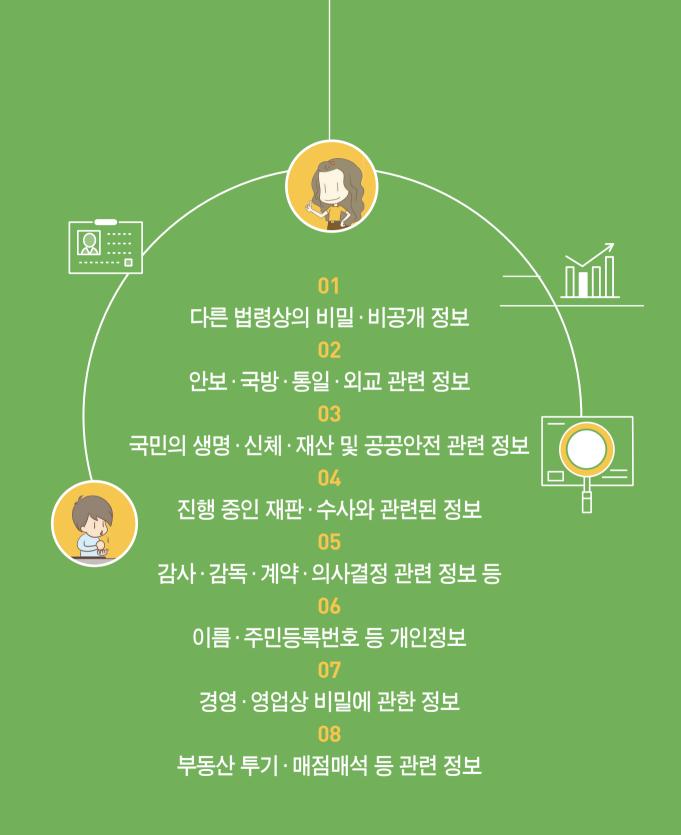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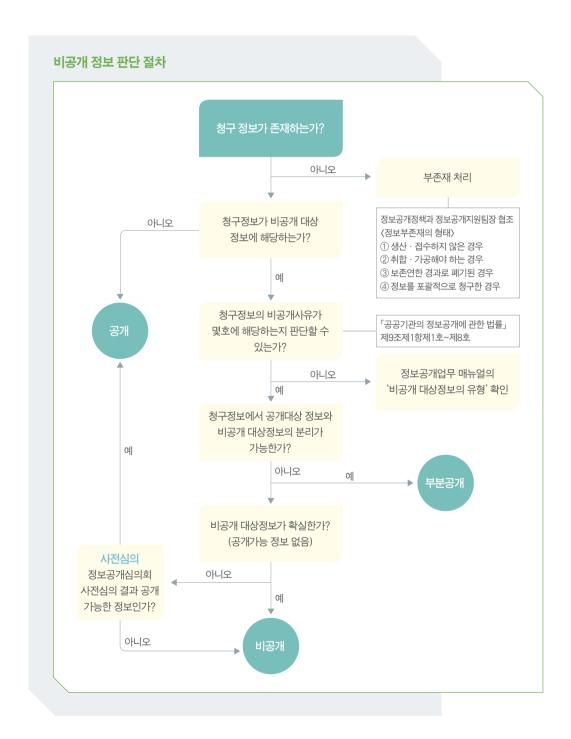
2017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제4장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지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 조의3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 ·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 29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 국세 · 지방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및 고 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 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 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 조의2제1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 안업무규정 제4조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사다고 인정되는 정보	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을지연습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 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 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충무계획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 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 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 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 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 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 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 성이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전시대비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귀빈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 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 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 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위기 · 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 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 (방호)	서울시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 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일시, 운행경로 관련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 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 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및 교량 등 안전도 조시결과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급ㆍ배수 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 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성당, 신체의 보호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 소 등 세부정보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인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 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국민의 재산	• 여권,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 · 변조, 범죄목적 등 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보호 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특정 지번의 매매가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 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 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	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행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 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 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정보
173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참고인 명단수사의견서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비고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감사	•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 · 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 시 감독 · 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독· 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 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 어뜨릴 수 있음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 화번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험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 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 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 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 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 권 등을 해할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 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 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 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 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 ·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 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 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 · 영 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 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음
입찰계약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휴대전화번호(개인용)자택주소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 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 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 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무원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 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 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 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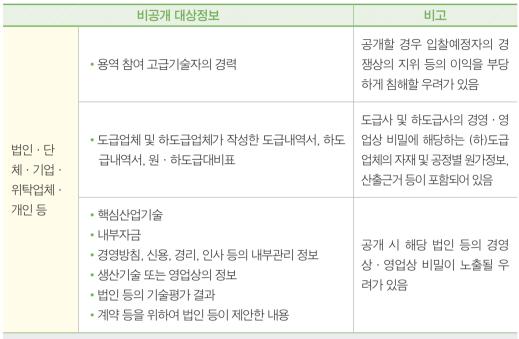
	비공개 대상정보	비고
일반시민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 · 단체 · 기업 · 위탁업체 · 개인 등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 · 예금 ·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 상 ·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 려가 있음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 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지역개발 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다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160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함(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1호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 건에 1차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조항임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함(서울행법 2015구합66806)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함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음

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 1. 해당 정보가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져 있어야 함
- 시행세칙, 훈령, 통첩, 예규, 지침, 총리령, 부령, 감사원규칙, 행정규칙 등 '비법규 사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법원 2003두8395)
- 2. 실질적으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②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014)³²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법 2006구합23098)
-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임을 받아 비밀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서울행법 2005구합20467)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두1191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법령해석례 11-0348)

^{32.} 민원회신문서는 공개함으로써 유사민원 등을 통해 개인의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등 공개실익이 크므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및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형법 제126조'에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은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보호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349)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 할 의무가 있음(서울행법 2005구합33241)
- '(구)공무원 징계령 제20조(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341)
-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문으로, 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두3049)
-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어,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35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등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들에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법 2015구합66806)
-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공공기관의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판 91쪽)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근거 법 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³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발명진흥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33.} 과세정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 바,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서울행법 2001구합36838)

^{34.}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획득한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함(서울행법 2008구합20925)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법 조항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 ·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 · 국세 · 지방세 · 건강보험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 시행령 제33조
• 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 정 제4조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했던 외부 참가위원 명단 및 소속(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 명단(지 구단위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비공개 	〈공개〉 위원회의 외부명단은 그 명단에 포함될 이름과 신분, 직위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 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 호 라목 및 마목에 의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 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권고
• 서행심 2014-○○ 행정심판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 령 제29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	〈 공개 〉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법무담당관) ▶ 행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비공개	〈 부분공개〉 해당 심판이 종료된 경우 참여한 위원명단은 공개, 자문의료 진 명단은 공개 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의사개진 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 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생활, 교통 등 분야별 민원데이 터(시민봉사담당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 	〈부분공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 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 특정 민원인이 본인에 대해 제기한 민원 내용 및 처분결과(조사담당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	〈 부분공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 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음 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통하여 특정인 을 유추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제3자 등의 사생활의 비 밀 등에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 고 부분공개 권고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다산콜센터 전화상담 통화내역(녹취파일 및 녹취록)(시민봉사담당관) ▶ 청구인이 통화 당사자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부분공개〉 녹취파일은 통화당사자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목소리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비공 개 권고 녹취록의 경우 청구인이 당사자인 경우 공개, 당사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의 의견청취 후 개별정황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최근 5년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인사과)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공개	〈 부분공개 〉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위원명단(교육정책담당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비공개 	(부분공개) '제3자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피해자 상담 또는 진료기록, 주민등록표 등' 분쟁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회의결과 통보서, 재심결정서, 학교 측 의견서' 등 당사자에게 이미 공개되었거나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공개시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공개(2013년 제3차, 2014년 제2차, 2015년 제14차,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명단'은 공개 시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교육 정책담당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비공개 	〈비공개/부분공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명 및 해당 사건 의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행 령 제33조의 '개인별 발언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4차, 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발언자명 제외 시 해당 발언자를 유추할만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2016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의견서, 녹 취록 등(법무담당관) 서행심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 사건 녹 음기록(법무담당관) 서행심 ○○○호 변상금 부과처분취소청구 심판 관련 심리 당시 피청구인 진술 녹취록 항정심판법 제41조에 의거 비공개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 의견서, 녹취록, 녹음기록은 행정심판법 제 4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공개(2013년 제3차, 제12차, 2014년 제13차 정보공개 심의회)
 국세청발표 고액 상습체납자 ○ 건설의 시세납부 현황 및 체납항목 및 금액(세무과) ○ 의 지방세 심사결정서(세무과) ○ 의 과거 20년간 취득세, 등록세납부내역(세무과) 전자담배에 부과된 업체별 부과ㆍ징수금액(세무과) 서울시장의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입증증거(세제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의거 비공개 	〈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의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 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특정사건 출동 관련 타인의 구급활동일 지(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비공개 	《비공개》 환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위임관계 또한 확인된 바 없으므로 비공개 필요 시 청구취지를 감안하여 상기 우려가 없는 수준의 구급 출동현황 공개 검토(20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구조·구 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조항으로 구급활동일지 비공개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음
•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지번(위치정 보)이 더해진 자료(정보공개정책과)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의거	〈 비공개 〉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자료는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된 자료이며, 통계법 제30조 등에 따라 '통계정보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체명과 결합

비공개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체명과 결합

된 형태로는 비공개(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타인이 제출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 · 부당함청구인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보낸 진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요청 정보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경남행심 2011-192)	
• 동료교사에 대하여 제출된 민원서의 민원내용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비공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일반적ㆍ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참가인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대상정보의 공개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며, 이 민원 제기 자체로 참가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해당 정보가 원고의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렵거나 대상정보의 공개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권리구제의 효과가 그로 인해 참가인 등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광주고법제주행정부 2013누88)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같은 법 제21조제3항이 자치위원 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10두291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한다는 명문의 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창원지법 2003구합1736)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한 회의 자료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국회법 제118조제4항 본문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 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서울행 법 2005구합2813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 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 사결정서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 정서'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 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 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임(서울고법 2002누 19086, 국무총리행심 03-04988)
• 조합에 부과된 과세정보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제3항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대법원 2006두18232)
• 특정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 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사건 과세정보는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 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 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서울행법 2011구합36838)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70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이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 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 시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청구인이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청구인의구체적 이익 등과 공개거부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서울행법 2002구합33941)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을지연습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 · 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시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 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 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 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 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 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 성이 있음
전시대비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귀빈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 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 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 · 재난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 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 (방호)	서울시 청사 배치도 ³⁶ ,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 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국가보안시설³⁶, 국가중요시설³⁷, 다중이용시설³⁸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 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성곽정비복원공사 준공수리보고서 (문화재과) ▶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 된 도면과 사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 부분공개 〉 해당 문건 중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 과 사진 등은 국가안보·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 로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이름, 구입시기, 구입비용, 관리비용, 운행 일지(수상관리과) ▶ 전시대비 시설인 도강예인선과 도강 부선의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 부분공개 〉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중 도강예인선과 도강부 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관리되는 전시대비 시설로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므로 해당 관공선의 자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시청 본관, 별관, 신관 설계도면(총무과) ▶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 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 건물 구조의 세부수치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공조 등)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35.} 건축물 배치도는 건축물대장의 등· 초본 발급절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제2호 및 제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36.} 국가보안시설: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

³⁷. 국가중요시설: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통합방위법 제2조13호)

^{38.}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 법 시행령 제2조17호)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시 신청사 지하의 화생방대피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공공사업부) ▶ 화생방대피시설(충무시설)은 국가 비상시설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화생방방호시설은 국가비상사태 시 충무시설로 사용되는 공 간에 있는 시설로서, 국가재난훈련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대 외에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청사방호시스템 강화계획 및 특정일의 청사방호직원 명단, 현재 및 앞으로 짜여진 당직명령부(총무과)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5조3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7 조에 따라 수행하는 보안 업무로 공 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청사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비공개(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상황별 위기관리매뉴얼(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발생 시 상황조치 등 대처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정수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며,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 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 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할 목적으로 수립 된 것으로,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물적 · 인 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구의정수장 보존대상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구의아리수정수센터) 김포공항 국제선(구2청사) 공항시설 내소방안전시설(소방통로, 비상구)이표시된 도면(강서소방서) 옛 안기부(現서울종합방재센터) 건물도면(벽체나 구조체, 층간높이, 실의구성, 평면도, 단면도)(소방재난본부) ▼국가보안목표시설이므로 공개 시국 	〈비공개〉 통합방위법 제21조,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제 14조, 제15조,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국방부 훈령 제1057호)에 의거 정수장, 방송국, 공항, 가스ㆍ정유시설, 공공청사 등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비 공개 권고

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요청 정보는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개인아이 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시스템 보안관리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개

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초동 일대 상수 관망도(급수운 ▶ 상수배관망, 속성자료, 위치 등은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은 국가	〈 비공개 〉 상수도관 관망도는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지하매설물(배관) 도면(공간정보层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규칙 제6조제1항 및 국가공간보안관리 기본지침에 의해 공기한되는 전력・통신・가스・하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기 	¹ 처리 '간정보 배가 제 하수도 d한 관 방된 지	〈비공개〉 국가기간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테러 등에 노출되 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 개 권고
 을지연습 기본계획(민방위담당관 충무4700 교통실시계획(안) (택시물류과) ▶ 을지연습 기본계획은 Ⅲ급 비밀시대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J로 전 1 있어	〈비공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 비밀문서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훈 명회 참석결과 보고(정보통신담) ▶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형 공개 시 국가안보 등 국익을 하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당관) 항으로	〈비공개〉 국가 사이버위기대응훈련 사항은 서울시 정보통신망 구성 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 략, 네트워크 경로 및 IP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 보가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 각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보고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덕수궁 돌담길 회복사업 영국 보안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도로계획과) ▶ 영국대사관의 경내 보안과 관련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대사관 보안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공개 시 대사관의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마찰 등 을 유발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 공개(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 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교통정보센터) ▶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 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시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 시 교통 혼란 등 막대 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 시 해킹이나 사이버테러에 이용되어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 당하므로 비공개(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관련 자료(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메트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중요기관으로서 요청정보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성정보및 보안취약점 정보 등 공개 시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비공개 〉 해당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추가적 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다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기 우려가 없는 사이버 공격 현황 및 조치결과 공개 권고(2016년 제11차 정보공개 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청구 정보는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	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
련 항목 분석결과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	을 종합하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당하지 않음	있다고 보기 어려움(서울행법 2015구합72610)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침 등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해당 지침 등이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단계별 조치가 노출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 변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므로 비공개(서울행법 2013 구합56140)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통계자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정보기관에 의한 간첩의 파견, 포섭, 선전·선동을 위한 교두보의 확보 등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대법원 2001두8254)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 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원문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사건 신청서는 공개 시 이후 중재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여론의 항배에 따라 자유로운 주장이나 외교적 해결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되는 점, 론스타 측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국제적 신뢰관계의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 중재절차 종결 이후 중재자료를 열람하여도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13구합 50999)
•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 결과로 작성한 목록 등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정보는 외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일정한 통상에 관한 합의 등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으므로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볼수는 없고, 비공개의 결과 발생되는 투명성 부족의 문제는 국회의 통제나 이후의 합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할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05구합20467)
• 한 · 미 FTA 체결을 위한 협 정문 초안 ▶ 2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한 · 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 · 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공개 시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 · 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 · 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비공개(서울행법 2006구합 23098)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 12629)
 -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구합 31987)

178

서울시의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

- 대상정보 : 측량원도(토지관리과)
- 행정심판 재결례(비공개) 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적극 공개(최근 자료의 경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처리)
- → 측량원도는 지적공부인 지적도 및 임야도에 현장에서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과를 결정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는 도면으로 토지의 소재, 경계 및 면적, 지번, 지목, 구조물, 도로의 현황 등에 관한 실제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면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토지의 경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어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함(중앙행심 2011-19000)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7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³³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급·배수 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 래할 수 있음

^{39.}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 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 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 협을 초래할 수 있음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국민의 재산 보호	• 여권, 인감관리대장	공개 시 위 · 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 익을 해할 수 있음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특정 지번의 매매가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 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 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롯데 시행 석촌호수 주변 지반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시에서 롯데 측에 용역결과 제출을 요청한 공문 및 연구결과 보고서(물순환정책과) ▶ 제3자가 제출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수행한연구용역과 동일 주제의 연구로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 공개 〉 요청 정보는 공개 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용역 의 수행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 기 어려움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 소 등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2016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검토 의견

 서울시 전체 관내 소방서 관할 1,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건물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면적, 우편번호 등(소방재난본부)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 방재행정에 방해가 되어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각 건물의 방화관리대상 해당 여부 및 주소, 우편번호, 연면 적, 사업장 전화번호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전화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아파트 절수조사 보고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절수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취수(수도) 배관설치도가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현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배관배치도 및 설치도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 어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 공개 나머지 보고서는 공개(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주상복합의 착공도면(건축기희과) ▶ 청구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특정인에게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부분공개〉 해당 건축물의 착공도면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 은 자에게 공개 가능하며,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3자 의견 청취 후 공개여부 결정 특히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물인 경우 각 타인의 재산권 침 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에 한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가리고 공개 권고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재생지원과) ▶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할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 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 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20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13.3.22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 〈비공개〉 원내용(출산육아담당관)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원 적사항은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보 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 〈비공개〉 청서 관련 모든 자료(마포소방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위험물 변경내역, 주유취급 소 구조설비명세서 및 관련 공문 2부는 공개하고, 지하탱크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위험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 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및 오염토 정화 토목공사 도면은 파 조제1항제2호, 제3호의 비공개 대상 괴 시 국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2014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평가내역 〈 비공개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 (토지관리과) ▶ 공개 시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 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재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 ○○동 토지실거래(수용보상거래 포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거래 함) 세부정보(토지지번, 거래일자, 실 거래가 등)(토지관리과) 당사자의 사적 활동에 속하며,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 ▶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밀 또는 자유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 〈 비공개 〉 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검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 재난대응매뉴얼, 안전점 결과보고서(건축기획과) 검 결과보고서는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공개

시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

로 비공개(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허가 · 준공도면 서류일체(건축기획과) ▶ 제3자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재산의 보호,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설계 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2013년 제2차 정보공개심 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웹서버 해킹사건 관련 의견서, 진술조 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 수사기록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의 기술적 사항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별도의 보완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OO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법 2011구합19284)
 방화사건 관련 의견서, 상황보고서, 수 사진행보고, 목격자 등의 진술조서, 수 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등 수사기록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드러난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서울 고법 2012누28249)
 핵연료 공장 증설과정에서 인근 주민자 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서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상 보호를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대전지법 2014구합103014)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면심사위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은 심사과 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 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폭언 · 협박 등의 위해 를 가하리라는 가정 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를 정 당화할 수 없음 또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형성된 여론에 의한 민 주적 통제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면 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 결과에 관한 대대적 · 집중적인 비난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 다는 점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 지 못함(서울행법 2008구합31987)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자료도 없음(서울행법 2008구합26466)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3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이유

-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 ·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 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13구합50999)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 12629)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 자 함(대법원 2010두7048)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의 의미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하며,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 · 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 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서울행법 98구3692)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10두24913)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서울행법 2002구합42299)
 - '수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가능(대법원 2010두7048)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 · 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12785)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재판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 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 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는 정보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본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 사전준비로 수집 · 작성한 일체의 감사 자료 문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공개 시 장래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청구인 측이 제출하거나 이미 수령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감사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조사담당관 기강 감찰팀에서 작성한 신청인 지장이 찍힌 진술서 및 문답서(조사담당관) ▶ 현재 금품수수 비위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로 청구인 본인의 문답서, 진술서는 객관적인 수사에 영항을미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행 중에 있어 수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술 등이 일부 이루어 진 현 시점에서 지장초래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2013년 12차 정보공 개심의회)
 광진구 ○○역 주변 청소년 유해 선정성 전단지 광고주 등에 대한 내사계획(민 생사법경찰과)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 	〈 부분공개 〉 해당 문서 중 수사방법 내지 시의 판단이 노출되어 관련자가 악용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 외하고 공개(2013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장애인거주시설 ○○ 행정처분 변경 조치 계획'결재문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 조치계획 통보'결 재문서(장애인복지정책과)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고발내용 등 재판의 심리 또 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2016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택시물류과)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료로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 ○○역 침수 관련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 부분공개 〉 보고서(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언론 등에 기 공개되었고, 시 자체 ▶ 문서위조 의혹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수사에 미칠 영향 뢰한 사항으로, 공개 시 수사 수행곤란 이 적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부분 및 관련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2013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 부분공개 〉 •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중 확정된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소송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소송 건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수(법률지원담당관) 있으므로 비공개 ▶ 소송의 사건번호 공개 시 소송상대방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그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에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개(2016년 제4차 정 비공개 보공개심의회) • 서울시 채용 변호사 성명 및 변호사별 〈부분공개〉 담당사건(법률지원담당관, 인사과) 변호사 담당사건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 ▶ 변호사별로 맡고 있는 자문사건은 내부 시 해당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 중인 문서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 비공개 변호사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므로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 서울시가 원고 · 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 정된 소송 현황(법률지원담당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 〈비공개〉 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 험성이 있으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홈 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페이지(나의사건검색)를 통하여 소송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 상대방을 비롯한 소송 진행 내용에 대 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 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의 사생활 및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 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검토 의견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신청사건립공사 민사소송 응소 방침 결재서류(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사용허가 취소'사건 응소계획(안)(총무과) ▶ 진행 중인 재판으로 관련된 정보로 서울시의 대응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재판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아파트비리 특별감사 연도 추가 연명부 제출'결재문서(공동주택과) ▶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으며, 문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경찰수사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그 직 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향후 동종의 조 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4대강 정비사업 공사 관련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의 구 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 관련 정보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현재위 재판과 직접적 ·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보다 명확히 하여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부산고법 2010누5615)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특정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서류, 농 지전용허가 서류, 산지전용허가 서류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유효한 분양계약의 존부나 대여금 채권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는 위 각 재판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청주지법 2012구합2028)
•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시에도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음(대전지법 2007구합44069)
• ○○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중앙행심 2015-1888)
 대법원 OO호 사건 관련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대리인별 착수금, 성공사례금 구분하여 공개)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 재판의 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음(중앙행심 2011-25182)
•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 · 관리계획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수용 · 관리계획'은 특별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와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위의 직 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 심 2005-08300)
 청구인의 수용자 건강기록부 내용 중 구 치소 의무관이 외부전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한 내용과 그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의 이름 ▶ 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외부 전문가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비공 개 정보는 교정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인천지법 2006구합3920)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시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 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 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위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함(대법원 2001두8827)
 -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주민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2003헌바81)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 이에 해당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랑하여 구 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대법원 2010두2913)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 비공개 사유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시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시 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주관적 평가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우비공개
 -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0두6114)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대법원 2002두12946)
 - 이 경우에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7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감사	 불시감사계획 *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의사결정 과 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불시 지도점검계획 • 불시 조사 · 단속계획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 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 시 감독 · 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 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 안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 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 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 과 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 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 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 · 미확정 유관기관 협 의 내용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 시공 공법 등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 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 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 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 심사조서, 입증자료 •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주택정책실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용역 결과 전문(주택정책과)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요청 용역 결과는 주택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적 성격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4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 일체 (공공재생과)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시 외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이미 해당 용역이 완료되어 공개 시 진행 중 인 용역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예산담당관) ▶ 현재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시에서 시의회로 제출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 수립과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및 시민의 알권리 를 위하여 공개 권고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영향 관련 주민설명용 자료(도로계획과)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 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등 수립 완료 이후 공개 가능 하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요청 정보는 주민협의회에서 열람의 형태로 기 제공된 바 있는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공개(201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사물인터넷(lot) 추진 기본계획' 결재문서(정보기획담당관) ▶ 비공개 방침으로 구체적 사업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개괄적인 수준의 사업 기본계획으로 지역주민 과의 협의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므로 공개 다만 향후 세부사업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 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 분히 설명(2015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동대문구청 〈공개〉 과 주고받은 질의회신문서(공동주택과) 관련 법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단순 질의회신 ▶ 실태조사 처분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 으로 공개 시 업무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 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다는 사유로 비공개 (2015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 부분공개 〉 •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보건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는 계획이 수립되어 의료정책과) 진행 중인 사업으로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들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 어 비공개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 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만, 자문위원단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 제외(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 중랑구 중화동 소재 '이화교 증설 확장사업'에 대한 세 부계획(도시계획과) • 홍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협의(도시정비과) • 서울풍물시장 위탁관리자 선정 심의내용(도로행정과) • 강남모노레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고서(교통 정책과) 〈 부분공개 〉 •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안)(택시물류과) 해당 비공개 사유의 소멸(계획수립 완료, 용역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간의 자원 완료. 사업종료 등)로 인해 내부검토 과정에 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자원순화과) 따른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개인정보 등 • 시장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시사항 목록(기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획담당관) ▶ 청구 당시 행정 내부의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유 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고, 미확정 내용의 공 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한 내용(소상공인지원과) ▶ 해당 자료는 유통산업발전법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질의문서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대규모점포의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상호, 지번, 개설자 등 대상 점포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법령해석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미확정된 민 원사항 관련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의 수행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 시 업무추진에 지 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20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경천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검토용역 보고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관련 정보(도시철도 계획부) ▶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용역 보고서는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되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협의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및 결과는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그 밖에 개최실적은 공개(2015년 제15차 정 보공개심의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결련택견, 십팔기) 조사 보고서(역사문화재과) ▶ 조사보고서는 전문가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위 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심의 등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승 단체의 기량, 의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단 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단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조 사자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비공개(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역 갈등영향보고서(갈등해소담당관)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대응 시나리오로 갈등발생시 대응방안을 담고 있어 갈등해소 전 공개 시 공정한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비공개〉 요청자료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갈등 대응을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갈등해소 전 공 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2013

공개

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비공개〉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것으로, 현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시설계획과) 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 ▶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위한 자료로. 공 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할 우려가 있고.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리 공 설 등의 정보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 개 시 부동산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 노들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공공개발센터)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 기본방향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의사결 있어 공개 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정 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시민들의 혼란 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 자문 결과보고(지구단위 계획과)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 T/F지 원팀 회의 결과 및 회의자료(47차)(지구단위계획과) •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결과(세운지구, 용산국 〈비공개〉 제업무지구, 원형택지)(지구단위계획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회의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공 록 및 회의결과)(지구단위계획과) 개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주민갈등 해소 T/F팀 실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추진단 회의결과 보고(11차)(지구단위계획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2013년 제10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용산 차 정보공개심의회) 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서울시 대책을 논의한 제목 문서)(지구단위계획과)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 시 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재생정책과)
 - ▶ 연구의 중간단계의 결과물의 공개는 공정한 연구수행 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별 해당 지역 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계획의 확정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시, 개인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공청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제공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안)(도시계획과)

- 2009년 시행한 도시기본 계획 미래상 설문조사 결과 및 원자료(도시계획과)
 - ▶ 서울의 중심지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공개

〈비공개〉

2030 서울플랜(안)은 현재 미확정된 내부검 토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 료 내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으므로 비공개하며,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 고 계획 확정 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일괄 공 개하는 것이 타당함(2013년 제15차 정보공개 심의회)

- ○○터널 면목동 방향 환기소 및 오염저감시설 시공도 면과 설비내용(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 해당 설계변경 건은 공사 관련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 부에서 설계변경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 사업주관부 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승인여부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 는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변경검토·승인 중에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인용하되, 설계변경 검토·승인이 완료되면 공개(20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 다산콜센터 직원 본인의 민원상담 녹취록(시민봉사담 당관)
 - ▶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은 공공업무 수행시 생성된 자료 로 업무수행자의 개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로 비공개

〈비공개〉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감사 · 감독 · 검사]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라 행정조치 〈공개〉 등을 하도록 구청에 통보한 문서(공동 현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요청 주택과) 자료는 기 공개된 바 있는 실태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 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 또는 ▶ 공동주택의 조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 단체명 등은 이미 익명화 되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2014 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유로 비공개 • 서울대공원(동물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관련 결재문서 3건(서울대공원 총무과) 〈부분공개〉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 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해 감사가 종결되어 공개 편, 직제관리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 정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기 어려우므로 요청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 개입으로 인하여 조직관리의 공정성 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 공개 • 2012.8월 감사과에 제출된 경위서(진 술서, 의견서 등)(민원해소담당관) 〈 부분공개 〉 ▶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 확인서 및 경위서의 경우 이미 관련 감사 및 소송 등이 종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결되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 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20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뚝섬 유수지 정비공사 관련 조사결과 (조사담당관) 직원의 뇌물수수 적발 현황(적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조사담당관) 한우 둔갑 판매 관련 영업정지처분 업체명(소재지, 구, 동호수 포함)(식품안전과) 잘감사・감독・검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해당 업무가 종결된 시점에서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 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안전감 사담당관) ▶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감사업 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 개 시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15명에 대한 성명, 당시 부서 및 직책, 현재부서 및 직책, 과실 공개(조사담당관) ▶ 감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비공개 	〈비공개〉 내부검토 중의 사안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의 공개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2012년 제13차 정보공 개심의회)
 '버스운행실태점검원 근무명령' 결재문서(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한 각 회사별 노선별 점검원에 대한 근무 명령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요청정보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공개시 비노출 방식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 공개 다만 해당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개(2014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입찰계약·기술개발]

▶ 사업기간 미종료로 아직 연구결과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사

유로 비공개하며, 사업완료 보고서 완

성 이후 제공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공개〉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 요청 정보는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 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교통운영과) 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6년 제2차 정보공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개심의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12년 5월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 〈공개〉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은 이미 완료되어 공개 시 업무의 관련 기초금액 산출내역서(계약심사과)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현저한 사항에 해당되지 ▶ 입찰 관련 정보로 공개 시 외부의 부당 한 관여와 압력이 예상되어 향후 공정 않으며, 공개로 인하여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교하고 치밀한 산출내역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는 바 공개(2012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 〈공개〉 충공사 수리모형실험 평가 및 출장 결과 입찰계약 및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된 사안으로 당해 의사 보고' 결재문서(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 시 향후 예정되 시설부) 어 있는 동종의 실험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 ▶ 시험 및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2015년 제1차 정보공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심의회)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홍지문터널 대기질 측정결과 보고(보건 환경연구원 대기부) 〈공개〉 • 홍지문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조사계획 등에 현저한 지 정을 위한 터널주변 대기질 조사결과 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없어 공개

공개심의회)

다만, 대기질 측정결과가 터널인근 측정값임을 오해의 소

지가 없도록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2013년 제11차 정보

[시험·인사]

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일반행정 9급 선택과목 원점수별 조정점수(인재채용과) ▶ 선택과목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공개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과목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택과목별 편중현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고, 향후 필기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실시에 있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비공개 사항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안전행정부 지침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타 당한 비공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4 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 (평생교육과) ▶ 시험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면접관 각각의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비공개 다만,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각 면접관의 총 점은 공개(201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인재개발원 체육지도요원 채용 관련 정보 (면접합격점수, 면접위원의 채점표)(인재개발원) ▶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8두8970), 해당 정보가공개될 경우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청구인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 면접합격 점수와 면접위원의 채점 총괄점수는 공개 권고
 서울시 사회복지직 면접평가 결과 유형별 인원(인 재채용과) ▶ 서울시 공무원 면접평가 등급비율이 공개될 경우, 면접위원의 평가 재량이 축소되어 공정한 시험관 리가 침해될 수 있고, 타 면접시험에도 영향을 미쳐 채용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 	〈 공개 〉 시험결과에 대한 단순 통계수치를 요청한 사항 으로 당해 시험 또는 장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미치는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을 경우 공개 권고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부분공개〉 공통과목을 제외한 소수직렬 과목 기출문제의 • 서울시 토목7급 5년치 기출문제(인재채용과) ▶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 경우 공개 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로 출제되고 있어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 구 ·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점이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정되므로 비공개 는 사유로 비공개 공통과목 기출문제는 공개(2014년 제14차 정 보공개심의회) • 서울시 사회복지직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인재채 〈비공개〉 용과) 면접관 각 항목별 면접점수는 시험 · 인사관 • 서울시 추가 임용면접 시험 평정결과(면접관으로 리 ·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 시 부터 받은 각 항목별 면접점수)(인재기획과)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 시험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2013 로서 공개 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 년 제10차. 2014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시민건강위원회 일반시민 공모위원 선정 채점 표(보건의료정책과) 〈비공개〉 타인 채점표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결과 ▶ 심사위원의 채점표는 시민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 한 심사위원의 판단과 관련 경험과 학식 등에 기초 가 담겨져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한 자율적인 심사 의견으로서 공개 시 심사위원의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별 채점표 에 기재된 심사위원명은 공개 시 면접업무 수행 공정하고 자율적인 심사업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자의 채점표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므로 비공개(201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비공개〉 • 특정 공무원의 2007~2010년 재직 근무지 및 직명 특정인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과 보직(인사과) 정보는 경력 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직무전문성과 상관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하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 어 비공개(20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4급에의 승진 관련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회의록 중 약무직 심사 부분(인사과) ▶ 공개시 승진심사대상자는 물론 심사위원과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분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요청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위원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저해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2차 정보공 개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안 및 심의결과, 예산편성실 과별 예산요구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전지법 2005구합3273)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기준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해당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으로서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이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공개(부산고법 2010누5615)
•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법 2007구합6342)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의 현장관찰점수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 통보서에는 영역별 평균점수 및 총점이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평가 점수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다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음 오히려 평가인증 업무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공개 시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중앙행심 2011-02165)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에서 본인이 제출한 답안지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본 시험은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공개 시 평가 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하거나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본인 답안지 열람으로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공개로 인한 피고의 업무가 폭증한다든가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개(서울행법 2012구합35436)
 직접출제방식으로 출제하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기 출문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으로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서울행법 2005구합22128)
•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공무원명(무기명), 처 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처 분, 징계사유 세부내용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청구인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무기명으로 공개하되 징계사유 세부내용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징계 관련자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구체적 징계사유를일부 선별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수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 30531),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다63558)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 세부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공개 필요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청구인의 필기시험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 총 응시자의 답안지 및 면접 채점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해당 	답안지는 청구인이 답변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공개하고,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11338)
•시 산하 사회단체보조금심 의위원회 외부위원 명단, 발 언자 명단,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외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공개 시 각종 사회단체의 로비등으로 인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발언자 명단은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공개회의록은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춘천지법 2004구합1207)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 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비공개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회의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언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서울행심 2014-863)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법무부행심 09-17315)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회의록의 회의내용은 비공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그 회의내용으로 발언자를 추단할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개 발언자의 인적사항 및 직함은 공개 시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대한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침목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개(수원지법 2008구합6364)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 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 에 대한 경위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 시 직원들의 감찰조사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원고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서울고법 2012누2796)
•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 시험문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문제은행식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대법원 2006두15936)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 시자의 면접채점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20126)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본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근 무성적평정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보 ·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거나 그 다점 자 순위로 등재한 승진후보자명보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공개 시평가위원들은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부담이나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수 없게 되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로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비공개(수원지법 2009구합12656)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 결과서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입찰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수 있고,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중앙행심 2011-25236)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 주관적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큰 점 등 위회의록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 · 교량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13두20301)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1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⁴⁰ 또는 자유⁴¹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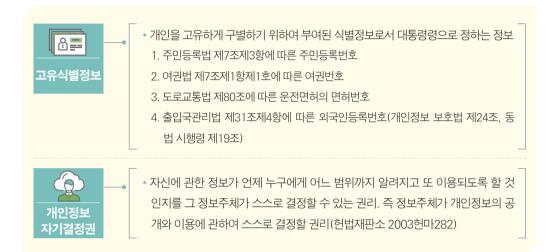
개인정보⁴²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 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청구된 내용 중 6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으며,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법 제14조)

^{40.} 사생활의 비밀 :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

^{41.} 사생활의 자유: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헌재 2002헌마518)

^{42.}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는 법 제9조제1항제6호 비적용(법 제9조제1항제7호 해당여부 검토)

-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 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u>'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대법원 2011두2361)</u>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2다49933, 현재 2002현마518)
- 공개청구 대상정보에 <u>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u>,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u>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u>,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대법원 2004두9180)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대법원 2008다42430)
-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두8050)
- <u>'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u>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 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 판 111쪽)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등)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판 114쪽)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마목)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대부업 등록부43. 건축물 배치도44)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고위공직자 5의 인사발령 사항)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중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⁴⁶, 징계 처분 대상 검사의 이름 · 소속 · 직위 · 처분의 내용⁴⁷)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증서류 구비 확인)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⁴⁸의 성명 · 직위(각종 문서의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4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4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45.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

^{46.} 대법원 2003두8302 등

⁴⁷. 검사징계법 제23조, 서울행법 2006구합27298

^{48.}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포함(중앙행심 2007-14671, 2007-19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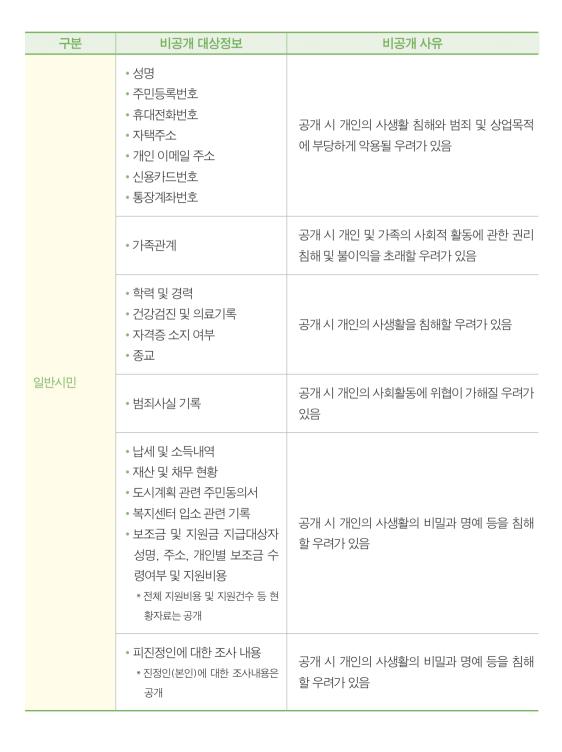
구분	공개 대상정보	비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라목	
	• 공문서 기안자 · 검토자 · 협조자 · 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대외직명 포함), 서명 *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복무 관련 정보 및 업무분장 휴가일자, 직무수행 관련 휴가사유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 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는 비공개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는 비공개	
	•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 출장여비 수령내역	대전지법 2005구합1536 서행심 2015-349, 중앙 행심 2013-12347	
공인(공공업무를	시정의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위촉된 공인의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공개	
11-1-1-1	• 공인의 성명 • 공인의 직업(소속 및 직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마목	
	제3자 의견청취 시		
일반시민	•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 주소 중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 지 제4호의3서식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 가능여부 검토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지 •지 • 구 • 신 • 통 • 기 • 디 • 모 • 시 • 사 • 가 • 인 • 차 • 이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 한	휴대전화번호(개인용)자택주소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퇴출후보자 명단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교류신청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원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 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관련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 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학력 및 경력 *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 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범죄사실 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 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내역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보건증 유무와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요청 관련 다산콜센터에신고한 날짜(시민봉사담당관) ● 특정 개인정보는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신고한 날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적고, 일반적으로 각종 행 정처분일은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본인 관련 신고사항 에 대한 알 권리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201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교통사고 목격자의 신고내용(종합방재센터) ▶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하였다 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녹취파일을 충실히 서면으로 정리한 녹취록을 공개하 되, 청구인에게 녹취록을 공개하는 취지를 상세히 설 명(201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대공원 내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업종과 수익허가 면적(서울대공원 운영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업체별 제기된 민원 건수는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민원제기 횟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 의 청구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20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운수에 대한 전액관리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당시 적발 공무원의 명단(교통지도과)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당시 적발확인 공무원을 추적하기 위하여 청구한 건으로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공개〉 개인에 관한 정보 예외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명과 당시의 직위는 공개 (201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퇴직자 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 퇴직 사유 등)(인사과) ▶ 퇴직자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개인의 동의 없는 정보공개는 불가하며, 부분공개 시에도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유추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요청 정보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다만 5급 이상 정년퇴직, 명예퇴직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1조에의해 공보에 게재되는 수준(성명, 소속, 퇴직사유, 퇴직 일자)으로 공개(201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서울시 출입기자단 명단(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언론사별 인원수)(언론담당관)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공개 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개별 출입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소속된 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 정보의 특성상 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건축기획과) ▶ 벌점 부과대상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벌점부과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금 관련 정보(강동수도사업소) ▶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 상 비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단체의 계좌번호는 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직원(산하기관, 소속기관 포함)의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실적(기간, 내용, 성명, 직위, 소속직책, 신고 내용 일체)(조사담당관) ▶ 청구 정보 중 성명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 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 권고
 공무원의 금품 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 발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 과)(조사담당관) ▶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적발자 인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 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정보는 공개 권고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 서울시가 원고 · 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 된 소송 현황(법률지원담당관)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의 심리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며, 사건번호는 대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를 통하여 소송상대방을 비롯한 소송진행 내용에대한 상세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사생활및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시가 검찰, 경찰로부터 받은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및 범죄내역(연도별, 범죄 유형별, 범죄혐의내용, 사후조치내역)(조사 담당관)
- 공무원 금품수수 적발실태 관련 자료(적발 일시, 적발자, 적발장소, 수수금액, 처리결 과)(조사담당관)
 -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 적격자심의위원 회 위원명단,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택정책과)
 - ▶ 주거복지전문가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유관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어 향후 공정한 위원회 등의 운영에 지장 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 2007-19차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연락처(건축기획과)
 - ▶ 이름/소속 및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 의견

〈 부분공개 〉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 려가 있으며, 특히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 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진행 중 소송의 사건명, 접수일, 진행상태, 상급별 판결 결과, 확정된 소송의 사건명, 최종판결일자 및 판결결 과 등 공개(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 부분공개 〉

범죄내역은 통계자료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적발실태 관련 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개인정보 를 가린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 권고

〈 부분공개 〉

위원 명단은 해당 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위원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 부분공개 〉

심의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공 인에 해당하므로 공개

위원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 공개(2014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 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건축기획과)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로 비공개 	〈 부분공개 〉 개별위원의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공개(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한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결과 보고' 결재문서(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대상 건물의 매각이 완료되어 의사결정이 종료된 사안 으로 외부 참석자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부모와 함께 하는 녹색식생활체험교육 일일 추진현황보고' 결재문서(농업기술센터) ▶ 교육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사진이 포함되 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붙임문서는 교육대상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나머지 결재문 본문은 공개(2014년 제17차 정보공개 심의회)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검토용역보고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관련 정보(도시철도계획부) ▶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구성현황, 개최실적, 회의자료, 회의결과는내부검토과정에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용역 보고서는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되어 내부검토 과 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협의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및 결과는 공개 시 업무추진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공개 그밖에 개최실적은 공개(2015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사단법인 ○ 협회 인가신청 당시 회원사 명부(경제정책과)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시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회사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2014년 제 18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부분공개 〉 • ○○대교 투신사고 관련 119신고 접수 통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음성파일, 접수직원의 나이와 내용. 접수직원 이름. 직위. 나이. 경력. 방재 경력은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센터 조치사항, 경찰에 연락한 사람, 유품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견 시간 및 발견자(종합방재센터) 그 외 음성파일이 아닌 통화내용, 접수자의 이름과 직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위, 조치사항, 유품발견 시간 및 발견 공무원은 공개 공개 (201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 부분공개 〉 민원회신 결재문서(건축기획과) • 「쓰레기 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자원순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 화과) 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 민원 회신 문서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민원회신(○○○,워커힐)' 결재문서(공동주 택과) • '서부간선지하도의 신구로 유수지 수직환기 구 설치관련 자료 공개' 결재문서(토목부) 〈 부분공개 〉 • 길고양이 TNR사업 관련 민원회신문서(동물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검토(회신)문서로 정보 보호과) 공개법 제14조에 의거 개인정보 및 민원인을 유추할 ▶ 민원(정보공개 청구) 회신 문서로서 사생활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권고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 • '○○ 주변 산책로 조성 공사 민원관련 실무 관계자 회의 개최' 결재문서(임대주택과) 〈 부분공개 〉

민원 관련 검토(회신)문서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

거 개인정보 및 민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

하고 공개 권고

• 넝마공동체-항구적인 주거 및 생활대책 민

▶ 사업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사항으로 공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원 검토 보고(자활지원과)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종합복지관 관련 제기된 민원내용, 민원 인 성명, 민원처리결과(어르신복지과)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 	〈비공개〉 특정 사건 관련 민원에 대한 공개요구로,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민원인(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권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 민원내용(출산육 아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의 관련 진정민원(도시 계획관리전문위원실) ▶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은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민 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비공 개(2013년 제11차, 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다산콜센터 ○○○ 팀장과 민원인(본인)의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시민봉사담당관)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녹음된 음성은 고유한 개인정보로서 요청한 음성파일에 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 공 개 시 상담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시민소통담당관) ▶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 시 수료자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당사자들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의 진정서를 제출한 ○ 의 259명의 명단(지구단위계획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관련 세목(사업인정) 고시에 첨부되는 주민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제외)(지구단위계획과) 사단법인 ○○○○○합회 총대의원 명단(장애인복지과) 노인돌보미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혜대상자 명단(노인복지과) 서울시 지방하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번지와 소유자(하천관리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 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 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 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 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권고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비공개〉 • 서울시 북촌 한옥 지원 현황(건축기획과)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지번, 금액, 지원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사생 ▶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 자료에는 주소, 지원 금액 등이 있어 개인정보사항으로 판단하 활의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고.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 를 위하여 북촌 한옥 총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는 공개 다는 이유로 비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 비공개 〉 • 특정 부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초과근무 수당(보도환경개선과)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2013년 ▶ 각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급받은 초과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근무 수당은 공무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계 등의 형태로 제공 권고 • 특정 공무원의 재직근무지, 직명, 보직(인사과) 〈비공개〉 ▶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경력관리사항에 해당 특정인의 재직근무지 및 직명과 보직에 대한 정보는 경 력관리사항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상관 되며, 공무원의 경력은 직무의 전문성을 증 명해야 하는 경우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공 없는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공개(2013년 제8차 정보공개 무원의 직무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청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심의회) • 특정 사건 방송보도 관련 조사담당관이 조사 〈비공개〉 한 관련자 진술내용(조사담당관) 조사 관련자 진술내용은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 감사(조사) 관련자에 대한 진술내용을 담은 형태로 공개하더라도 당사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크며. 자료로서 당해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내용만으로도 조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조사업무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로로서 공개 시 진술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 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개(2016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J/MAIVIIO	TL7dr II O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사면심사위원 명단과 약력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므로 공개(서울행법 2008구합31987)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공문서의 성립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공문서가 동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131)
• 대부업 등록부의 내용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록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비공개로 할 수 없음(법령 해석례 07-0253)
•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주소가 반드 시 필요하기에 공개(중앙행심 2010-17236)
 강간죄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 공소 장에 대한 청구(피고인의 주민등록번 호, 직업, 주소와 본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조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함(서울고법 2005누17067)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특정 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에 관한 정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공개단, 제보자의 권리구제는 제보자의 이름, 주소의 공개만으로 충분하므로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정보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법 2008구합26466)
• 진정사건 기록 중 ○○○에 대한 각 진 술조서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사건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서울행법 2007구합7734)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및 발화지점 점유 사용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비공개 시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 의 이익이 이 사건 발화지점의 점유 사용자의 사생활 등 이 익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단, 주민번호는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필수정보는 아니 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09-18296)
• 민사소송 판결문(배우자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형성과정 등 포함)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판결문 중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위 원고의 신분 및 혼인관계,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의 형성과정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비공개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청주지법 2013구합192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가)사업승인 심사자료에 포함된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수, 총투자액, 주식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나)법인 주주 대표이사 등의 주민등록 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다)경진대회 수상자 성명, 소속, 국적등 수상자, 강연자등 개인에 관한 사항 (라)비용지출 수령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등 정보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가)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 (나)의 정보는 법인 주주에 관한 정보와의 관련성을 넘어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공개(다)의 정보는 모두 대외적 활동으로서 각 대회, 사업, 강연등에 공개적으로 참가하였던 것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라)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그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공개(서울행법 2013구합16890)
• 보조금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고속철도역의 유치위원회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사용 내용에 관한 서류 일체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개인의 사생활 등의 이익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대법원 2009 두14224)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행사 등에 참가 또는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에 관한 정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하여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3두8302)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私 人)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지출 증빙 중 사인(私人)인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 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 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 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비공개(대전지법 2005구합2928, 대전고법 2001누2162)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개발사업 내 보상 관련 정보 중 제3자 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 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 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 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수원지법 2005구합5292)
• CCTV에 녹화된 통행인 얼굴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사건 녹화물 중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함(대법원 2012두25729)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전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전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등은 공개 시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서울행법 2009구합40575)
 사업제안서 및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성명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용역사업의 업체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공개 공개된다면 이름과 소속을 통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중앙행심 2013-19463)
•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참석자명단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해당 협의회 위원들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55개 수정권고안의 토대 마련가 마련되어 참석자 명단 공개 시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상 및 역사관이 공개되며, 한국 근 · 현대사 역사교과서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여론 공격은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는 공익을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행법 2009구합4739)
• 성과급 순위명부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성과급 지급대상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공 개(대전지법 2005구합1536)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채권압류 현황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이므로 비공개(전라북도 행심 08-268)
•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법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직무수행 시간에 대한 보 전차원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에 관 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의 이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국무총리행심 06-14443)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를 포함한 인사기록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서, 이는 공개 시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중앙행심 2005-17455)
• 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등의 인적 사항 및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 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 ·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 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 · 사회 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법원 2011두2361)
•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 ▶ 6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1두16735)



경영상 명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정 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

•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 법인 외에 정치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도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⁴⁹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영업상 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정되지 않음(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647)

비공개 이유

•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 법원 2008두13101)

^{49.} 안상운, 『정보 공개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음과모음, 2015, p.427.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대법원 2009두1902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함(중앙행심 2012-24651)
 -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법인 등의 성격,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2두12303)
 -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대법원 2010두24647)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 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해당(정부법무공단 2012-440,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판 119쪽)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나목)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 및 확대를 미리 방지
-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7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 단체 · 기업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 · 예금 ·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지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⁵⁰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위탁 업체 · 개인 등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음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 급내역서, 원 · 하도급대비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 · 영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 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의견
 서울시의 언론사별, 부서별 신문구독현황(언론 담당관) ▶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뉴스통신사에 지급된 기사검색 뉴스사이트 이용료, 전자신문 스크랩 운영 및 저작권료, 전광판광고비 내역 등(언론담당관)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이용료 및 저작권료는 해당 통신사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 개 권고
 세월호 사고 기부금(성금) 모금 관련 ○○(주) 가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및 단체별 모금액(민관협력담당관) ▶ 제3자가 제출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 청한 바 있으나, 법령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심의 요청 	〈 공개 〉 관계 법령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 로 공개(2016년 7차 정보공개심의회)
 서행심 2014-○○, -○○ 관광 숙박업사업계 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자료(법무담당관) ▶ 관련 법령 및 제3자 의견 검토 결과,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공개〉 요청 정보는 타 법령에서 공개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통영향 평가ㆍ분석 기법에 기초한 평가결과일 뿐이어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한 한강 괴 물 조형물 설치에 대한 상세 비용내역(한강사 〈공개〉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해당 계약이 이미 업본부 문화홍보과) ▶ 총 사업비, 자금계획, 상세내역 등은 경영상 영 체결 완료되었으며, 특히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은 업상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감시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여 공개 권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권 관련 계 〈공개〉 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 요청 정보는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 익률 등(교통운영과) 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 ▶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의 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의 영업상 (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서울메트로 9호선과 서울시가 체결한 실시협약 〈공개〉 서 원본(도시기반시설본부)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협약서를 비공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이었 개할 경우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고, 협약서 상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시민의 알권리 및 시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이익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기밀 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권고 유지 규정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잠실야구장 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잠실야구장 〈 부분공개 〉 편의시설 확충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내 요청 정보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용(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서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2014년 제16차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혼란이 야 정보공개심의회) 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택시에 보조한 콜 관련 금액(택시물류과) 〈공개〉 ▶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 콜 관련 보조금은 전체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해당하지 않음(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07. 경영상 · 영업싱	비밀에 관한 정보
---------------	-----------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및 2013년 7월 10일 충전소 관련된 서류일체(택시물류과) ▶ 노사 간에 협약한 내부관리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시 약용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공개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경영 ·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충전소명은 기 공개되어 있어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 음(201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결재문서(주차계획과) ▶ 업체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연장 허가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시설 계약자 및 전세금 등 일부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 을 제외하고 부분공개(20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 의회)
•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 재문서(보육담당관) ▶ 공개 시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 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붙임문서는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점수 등 경영 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명 및 공인여 부를 공개 결재문 본문은 상기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공개(20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결과 보고(공원녹지정책과) ▶ 금융기관에서 사업비 기부를 받아 조성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한 사항으로, 기부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예산을 수반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예산, 사업 내용 및 운영실적 등은 공개 다만 사업비를 기부한 업체명과 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체별 기부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공 개법 제14조에 의거 업체명을 제외하여 공개 권고
 서울시 지정금고 현황(재무과) ▶ 금고은행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관련 법령(조례)은 공개하고, 연평균 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협력사업비는 시 금고 은행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연평균 잔액 및 이자수익금 경우 서울시 예산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은행의 경영 · 영업상 비밀과는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개 시정협력사업비 및 이자율은 시 금고 입찰과 관련된 업 체의 영업전략으로서 경영 · 영업상 비밀에 직접적으 로 해당되어 비공개(201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의견
 서울시와 ○○도시철도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서 중 패널티 징구 근거 부분 등(도시철도공무부)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협약서상 비밀 유지 조항을 들어 비공개 	〈부분공개〉 협약서 중 민원처리와 관련된 내용 및 계약공기에 대해 명백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연기될 경우 위약 패널티 근거 조항은 공개 다만, 당초 총 사업비와 사업비 구성 상세내역 등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20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장충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펜스 보호패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 계약 관련 정보, 펜스 보호패드 구매설치사업 계약 관련 정보(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계약에 관한 사항과 업체 등의 경영상 ·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요청 정보 중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예정가격 검토보고 문서는 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이를 제외한 계약서 및 사업 시행방침, 공사내역서, 대가 지급현황서(준공검사 · 감독조서) 등 계약 관 련 정보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2015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보라매안전체험관 프로젝터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납품관련서류일체(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요청 정보 중 수입신고필증 내 해외거래처 정보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품확인서 및 해외거래처를 제외한 수입신고필증 은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공개(2015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구 소재 에너지 다소비 신고업체 및 업체별에너지 사용량(녹색에너지과) ▶ 해당 신고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에너지다소비신고 업체명은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사용량은 해당 사업자의 동의 시 공개하고, 부동 의 시 구체적 사용량이 아닌 개략적인 범위만 공개 (2012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검토 의견

공개(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자△△△호 ○○여행사로 이전등록한 접수서류(버스관리과)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다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접수서류 중 양도양수신고서의 양도가격과 시기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으로서 경영 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공개 (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사단법인 ○○선교회가 제출한 정관변경(기본 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문화예술과) ▶ 서울시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는 사유로 비공개 	〈부분공개〉 요청 정보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기 명날인 부분 및 법인기본재산 상세목록은 비공개하 고, 정관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2015년 제 5차 정보공개심의회)
 ○○봉사회 소속 구급차량 번호 및 지부현황 (보건의료정책과) ▶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법인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지부현황은 단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소속 차량번호는 단체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료로서 비공개 권고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인력개발과) ▶ 상담사례 등 위탁업체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공개 시 위탁업체 권익의 심각한 침 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센터의 운영실적, 성과, 상담사례 등을 담은 문서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나 상 담기법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 참가자 사진 등 개 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권고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출납장부 및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시민봉사담당관) ▶ 120 다산콜센터 위탁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 ·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운영 중에도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경쟁관계에 있어 위탁업체별 운 	〈비공개〉 120 다산콜센터 각 위탁업체 운영장부는 경영 · 영 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공개 시 법인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영장부가 공개될 경우 당해 업체들의 정당한 영

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비공개〉 노동조합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간에 체 시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생활환경과) (20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단체협약 공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내용은 개개인 간에 기관장과 는 노사합의에 따라 서울시청(환경미화원) 노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 바. 협약서의 내용은 환경미화원 개인의 급여사항. 공개 근무조건, 개인 후생복지사항 등 조합원의 개인정 보가 포함되어 있음 〈비공개〉 •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운영현황 보고' 결재문서 나눔카 서비스는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통정책과) 요청 정보는 민간사업자의 실적 등 경영 · 영업상의 ▶ 법인의 경영 · 영업상에 관한 정보 등으로 공개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업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201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 ○ ○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 원가자문 업무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 문 설계도서(계약심사과) 개 시 자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 해당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작성 래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계약(입찰) 추진에 지 하고 검토를 의뢰한 설계도서로서 공개 시 조 장을 초래하여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합(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 비공개 의회) 〈 비공개 〉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사업제안서(마을공 공모단체의 사업제안서에는 개인정보 및 사업추진 동체담당관) 전략 등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 공모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 공정한 심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2014년 제12차,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07.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료(재생지원과) ▶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영업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사항라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기술인력소득증명원,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현황,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법인의 영업상 경영·영 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20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 서비스(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평가점수 - 기술평가(실적평가), 가격 평가 결과(총무과) ▶ 동종 사업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평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적 및 사업전략 등 영업비밀 사항 예측이가능하여 타기관 입찰시 사업자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요청 정보는 타사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업체명을 가린다 하더라도 기 공개된 타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업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201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역사문화재과) ▶ 조사보고서는 전문가 조사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심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승단체의 기량, 의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단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 조사자가 유 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고, 단체의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20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업체명(택시물류과) ▶ 부가세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등 국세청의 최종처분 이전의 자료로서 국세청의 추가점검 및 최종처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공개 시 특정 업체의 이익을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요청 정보는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중간단계 성격의 점검결과로서 국세청의 확정처분 전까지 변경될 가 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사실의 공개로 해당 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6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830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없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다만, 물품구매 관련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함(법령해석례 06-0132)
• ○○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큼(대법원 2007두1798)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법인택시 사업장별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 및 보수총액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자격취득일, 자격상실 일, 연간보수총액, 월평균 보수, 월별 근로자수 등 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그들의 보수 와 관련된 정보와 고용 · 산재보험의 가입 및 해당 보험료 산 정을 위한 신고와 관련된 정보들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택 시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 는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개(대전지 법 2012구합5420)
• 운수업체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액(운 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적자노선 보조 등의 공익적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당해 목적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라도 공개의 필요성이 큼 운수업체의 적자노선에 관한 실태가 공개될 경우 그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됨이 정당함(대법원 2005구합9171)
• ○○공사의 ○○지구 아파트 관련 아 파트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각종 공익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의 공개를 통 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 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 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대법원 2011두4602)
•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질 수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서울행법 2005구합12398)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재건축 사업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 평수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사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움(대법원 2003두9459)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두20587)
 택시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서, 임금협 정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 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 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 경영상 정보라고 보 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청구인 회사의 노조원들에게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라고 보기도 어려움(중앙행심 2013-07528)
• ○○기업의 2012년 ○○대학교 병원에서 산정한 청소용역 원가산정내역서, 외주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기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업이 다른 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영업활동이 곤란해 진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소속 근로자들의 현 재 근로 조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핵심적 인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전지법 2012구합3059)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양기관에서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지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중 상위 또는 하위등급에 속하는 기관의수와 주소 · 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서울행법 2005구합16833)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BTL 사업 추진현황 및 실시협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보조참 가인의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 자체가 공공적 ·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부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나목 소정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광주지법 2008구합1146)
• ○○도시공사와 ○○건설 컨소시엄 간 체결한 어등산 개발협약서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공공성 · 공익성이 강하고,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보조참가자(〇〇리조트)는 협약에 의해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되므로 협약을 단순한 사법적 · 일반적 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협약의 체결이 완료된이상 이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지위나 사업수행에 장애가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협약체결 · 이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정보공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주민 불신 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 (대법원 2010두12156)
• 정부기관의 정부(정책)광고와 관련,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 약단가'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사 중 지상파 방송과 기타 매체사는 각각 한국방송공사와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별 광고단가와 전체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집행한 정부광고(정책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 중 판매방법의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산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는 판매원가 산출내역보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다고볼 수 없음(법령 해석례 06-0037)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 명세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 · 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대법원 2010두24647)
•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일부 해당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 가격, 계약 상대방의 성명, 계약금액 및 1천만 원 이상의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따라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음(법령 해석례 11-0395)
•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각종 자금조달과 회 계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정보 중 문제의 과세정보에는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언론사의 수입ㆍ지출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임(서울고법 2002누19086)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법원 2003두8302)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 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임(수원지법 2005구합5292)
• 운전기사별 운송수입현황(회사 소속 운전기사별 출·입고시각, 수입금, 연 료량,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시간 등 포함) ▶ 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위 자료에 담긴 정보는 이와 같은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공개(광주지법 2012구합324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48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07구합 15131)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판 125쪽)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

-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2016년 개정판 125쪽)
-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 공개 대상이 아님
-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건축 및 주택건설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 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도시개발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 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지역개발계획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 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서울시 정보 비(부분)공개 사례 분석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풍납토성 합리적인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보고서(문화재과) ▶ 보고서에는 권역별 개발방향 등 각종 부동산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시 투기 등의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공개〉 해당 정보는 주민의견을 수렴, 문화재관리 및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문화재청에 기본계획을 수정・반영토록 건의하고자 정책참고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공개시 부동산 투기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예측만으로 비공개하기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2012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재건축 연한 완화에 따 른 가격변동 점검)(토지관리과) 〈공개〉 •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동산시장 동향보고(토지 해당 자료는 2007년도부터 내부적인 정책참고용으 관리과) 로 활용하기 위해 월 단위로 발행하는 참고자료로서 ▶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개 권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는 사유로 비공개 〈 부분공개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 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 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역 현황 등(재생협력과)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 직권해제 예정지역 및 해제 요청지역은 공개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 및 재산권 침해 등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 등은 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시에서 보 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20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 부분공개 〉 • 공원조성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 시 목록과 심사분석의뢰서 관련 서류(공원조성과) 보상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 ▶ 보상대상 사유지 지번, 향후 보상계획 등 공개 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업목록 및 보상이 완료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투자심사를 통과 된 사업의 심사분석의뢰서는 공개(2014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하여 공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공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관련해 현재까지 실태 조사가 완료된 구역 모두의 개별 자산평가금 액 목록(재생지원과)
 - ▶ 특정 개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 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 공개

〈 부분공개 〉

개별 자산평가금액 목록은 특정 개인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재산보호에 중대할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정 및 해제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어 비공개

실태조사 감정평가 등에 관한 기준은 공개(2013년 8차 정보공개심의회)

-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시설계획과)
 - ▶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위한 내 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리 공개 시 부동산 관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현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고,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등의 정보는 도 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 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 므로 비공개(20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 일대)』 재정 비용역 착수 보고회의 결과(도시관리과)
 -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미확정된 내용이 공개되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재정비용역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2015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비공개〉 (재생협력과) 정책구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각 이해관계자 ▶ 다수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정책으로 공개 의 의견 및 주관적인 판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 개 시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 시 사회적 갈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으며, 미확정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에게 이 을 초래할 수 있고 정비구역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정책관계 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 시민 등의 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2015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비공개〉 • '아파트지구 및 한강변 관리방안 용역 관계관 관련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 검토회의' 결재문서(공동주택과)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투기 ▶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으므로 비공개(2014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건 〈비공개〉 요청 정보의 제3자 발급 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 축기획과) ▶ 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 대한 제3자의 발급요 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청에 대하여 발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 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 지 않아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비공개(2013년 심의 요청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 여객자동차 터미널 복합화 사전협상 검토기준 〈비공개〉 세부적인 시의 개발방향 등이 포함되어 대상지 및 인 ▶ 관련 부서간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악용될 우려가 있으 위한 자료로, 공개 시 관련 부지의 부동산 투기 므로 비공개. 해당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 이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후 공개 권고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검토 의견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안) 보완요청(재정비과) 삼청동길 및 가회동길 지역지구단위계획(한옥 문화과) 돈화문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회 결과보고(한옥문화과) 공공주택 10만호 건설사업 추진계획(임대주 택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비방안 연구용역(임대주택과) > 정보공개 청구 당시 해당 개발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정보를 얻은 자와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있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제시 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업 종료 등 비공개 사유 소멸 시점에서 공개 권고
• ○○정수장 인근 ○○아파트 등 주변 거주민을 위한 대책(검토결과)(공원조성과) ▶ 공개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비공개〉 해당 정보공개 청구건은 ○○정수장 전면부 지역에 대한 공원용지 편입여부 및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원용지 편입여부는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의 재산변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세부적인 정책이 미결정된 상황으로 내 부결정 과정의 정보이므로 비공개 권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주거재정 비방안 연구용역(임대주택과) ▶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 유로 비공개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에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분석 및 방안 제시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 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 련된 구비서류 및 협의내용 과 협의결과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 · 승인 · 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 · 인가 · 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할 수 있음(중앙행심 200510233)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 류일체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이 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중앙행심 200103898)
•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 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 명회 PPT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 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부분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의 내용은 1. 과업의 이해 2. 역세권 장기전 세주택이란? 3. 대상지 현황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5.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 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공개 시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움(서울행심 2011-373)
• 부안군에서 관리 중인 국유 지와 군유지 관리대장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국·공유재산 목록은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정보임 또한, 청구인의 정보 청구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조상 땅 찾아주는 것이나, 관련 법에서는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전북행심 2008–282)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 ○○동 일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2000년 이후의 사용허 가 또는 대부 내역(국유재산 의 구분, 주소, 면적, 허가일 자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일 자, 상대방, 기간, 사용료 또 는 대부료)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 ·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공개(법령 해석례 06-0037)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 분허가 신청 관련 자료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이 사건 정보는 대체취득 부동산의 주소, 소유주, 임대상황과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 세부기준 및 인근 부동산의 평가사례, 감정평가금액 및 계약조건 등 계약이 해지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대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중앙행심 2013-06580)
 사유림 매수 현황(소재지번, 면적, 매수이유, 매수목적, 매수금액, 현재 활용 현황) ▶ 8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 32%를 목표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유림 등을 매입하여 국유림율을 확대하고 있는 바, 소재지번과 면적, 매수 이유, 매수 목적, 매수 금액, 현재활용 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임(중앙행심 2011-30387)